## 대구대학교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 신규채용지침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교원임용규정 제3장 제16조 내지 18조에 의거 교원 신규채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우수한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 채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충원) ①대학(원) 또는 기관의 장은 관련학부(과) 및 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총장에게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 충원을 요청한다.
  - ②충원대상 학부(과), 기관 및 인원은 총장이 결정한다.
  - ③총장은 충원요청을 한 경우 이외에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원대상 학부 (과), 기관 및 인원을 정할 수 있다.
  - ④교육 및 연구 능력이 우수한 전문경력인사를 특별채용 할 경우엔 제5조 내지 제12조의 심 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.
- 제4조(공고) 공채를 통한 신규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·채용인원·지원 자격·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지원서 접수) ①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는 자는 접수기한 이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터넷(본교 홈페이지)으로 접수(입력)하여야 한다.
  - 1. 교수초빙지원서(별지서식 1)
  - 2. 연구실적목록(별지서식 2)
  - 3. 자기소개서(별지서식 3)
  - 4. 최종학위논문 요약본(별지서식 4)
  - 5. 대표실적 요약본(별지서식 5)
- 제6조(심사절차)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 신규채용에 따른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1호부터 5호의 심사단계는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.
  - 1. 지원자격심사(1차)
  - 2. 서류심사 및 실적물접수
  - 3. 지원자격심사(2차)
  - 4. 기초·전공심사
  - 5. 학부(과) 면접 및 공개강의 심사
  - 6. 본부 면접심사
  - 7. 교원인사위원회 심의
- 제7조(지원자격심사) ①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지원자격(학력, 경력 등)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지원자격을 "可"로 한다. 이때 심사결과 보고서는 「교원신규채용 지원자격심사표」(별지서식 6)에 의한다.
  - ②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, 연구처장, 교무학사부장으로 구성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.
  - ③지원자격심사 통과자가 3인 미만인 분야는 원칙적으로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  - ④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근거로 실시하는 지원자격심사(1차)와 실적물비교검토 후 실시하는 지원자격심사(2차)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통합하여 실시할 수

있다.

- 제8조(서류심사 및 실적물접수) ①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근거로 지원자 연구 실적의 양 및 질적수준을 심사한다.
  - ②심사위원은 해당 학부(과), 기관소속 교원 또는 총장이 임명하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교원으로 한다.
  - ③지원서 입력착오, 허위입력 등으로 인하여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.
  - ④서류심사는 「교원신규채용 서류심사조서」(별지서식 7)에 의한다.
  - ⑤서류심사 통과자는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내에서 선정하며, 지원자수가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내인 분야는 서류심사를 생략한다.
  - ⑥서류심사 통과자는 소정기한 이내 아래 각 호의 실적물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. 단, 우편물은 기한 이내 도착분에 한한다.
  - 1.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  - 2. 경력증명서 각 1부
  - 3. 전공관련 자격·면허증 사본 각 1부
  - 4. 연구실적(물) 각 1편
- 제9조(실적물 비교·검토) ① 서류심사 통과 및 실적물 제출자를 대상으로 지원서에 입력된 각종증명서류를 비교·검토한다.
  - ②검토위원은 초빙분야별 전공교수 2명 이내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제10조(기초·전공심사) ①지원자의 전공과 초빙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학문적 우수 성을 심사한다.
  - ②심사위원은 초빙학부(과) 또는 전공관련학부(과)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3~9인을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이 경우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. 단,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의 구성비율은 초빙분야에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  - ③ 지원자의 석·박사학위과정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.
  - ④ 심사위원의 1/2이상이 전공일치 또는 부분일치로 판정한 경우 전공일치로 한다.
  - ⑤ 기초·전공심사는 각각 교원신규채용 기초심사표(별지서식 8) 및 교원신규채용 전공심사표 (별지서식 9)에 의한다.
- 제11조(면접대상자 선정) ①면접대상자 선정은 기초·전공심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. 다만, 교원신규채용지침 제17조에 의거 재심위원회가 구성되어 전공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우선한다.
  - ②면접대상자는 초빙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한다.
- 제12조(학부(과)면접 및 공개강의 심사) ①심사위원은 해당학부(과) 소속대학 학장 및 학부 (과)·부서소속 교원을 2인 이상 5인 이내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 - ②면접심사는 「학부(과) 면접심사조서」(별지서식 10)에 의한다.
  - ③ 공개강의심사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며 「공개강의심사조서」(별지서식 11)에 의한다.
  - ④ 면접심사에 불참한 자는 신규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제13조(본부면접심사)①본부면접심사위원은 총장, 부총장, 대학원장,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10 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본부면접심사는 「본부 면접심사조서」(별지서식 12)에 의한다.
- 제14조(제청예정자 결정) 총장은 서류심사, 학부(과)면접심사, 본부면접심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배수의 범위내에서 제청예정자를 선정한다. 심사별 반영비율은 기초·전공심사 40%, 학부(과)면접 및 공개강의심사 30%, 본부면접심사 30%를 원칙으로 한다.
- **제15조(경력환산)** ①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의 경력 계산은 경력환산표(별지서식 13) 를 따른다.
  - ② 경력연수는 학사학위 취득 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취득 후부터 계산한다.
- 제16조(직급 부여) 임용직급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.
- 제17조(심사결과 공개)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채용심사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한 자가 심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확정된 후에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」또는 본 대학교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개한다. [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6항]
- 제18조(보칙) ①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채용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임용규정,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 교원임용규정, 교원신규채용지침 및 교원특별채용 지침을 준용한다.

부 칙		
	이 지침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	0]
부 칙	이 지침은 201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	റി
부 칙	의 시점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	٦١
	이 지침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	(٥
부 칙		
51	이 지침은 201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	0
부 칙		

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